

【서식 2-3-2】

○ 교지확보율 (편제정원 기준)

편제정원 수 (A)	교지 기준면적 (C)	보유면적 (D)	보유율(%) (D/C)×100

(단위 : 명, m², %)

※ 작성요령

- ① 편제정원 수(A) : '08학년도 기준 편제정원
- 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
- ③ 보유면적 : '08. 3.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

○ 교지확보율 (편제정원 기준)

재학생 수 (A)	교지 기준면적 (C)	보유면적 (D)	보유율(%) (D/C)×100

(단위 : 명, m², %)

※ 작성요령

- ① 재학생 수(A) : '08. 3. 1. 기준 재학생
- 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
- ③ 보유면적 : '08. 3.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

【서식 2-3-3】

○ 교원확보율 : '11년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한 대학교원 현황에
할 것이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음

【서식 2-3-4】

○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 (A)	수익용기본 재산보유가액 (B)	확보율(%) (C=B/A)×100	대학교운영경비부담률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D)	대학교운영경비 충당액(E)	부담률 (F=E/D)×100
			(수익율(G) : %)		

(단위 : 백만원, %)

※ 작성요령

- ① 확보율(C)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기제
- ② 부담률(F)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에서 대학교원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부담률 기제
- ③ 수익률(G) : (D/B)×100
- ④ 작성기준일 : '08. 3. 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서식 3]

☐ 대학 등·폐합 목적 및 기대효과

(통·폐합 목적 및 기대효과를 대학의 발전계획에 기초한 특성화와 연계하여 기술함)

[서식 4]

☐ 통·폐합에 따른 '12학년도 입학정원 조정계획

○ 총괄

대학별	'08학년도 입학정원 (A)	'12학년도 입학정원 (B)	감축인원 (C=A-B)
○○대학(교)			
○○대학(교)			
계			

○ 대학별 세부조정 내역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대학명칭					통합된 대학의 명칭					
계열별 학명칭	모집단위			'08학년도 입학정원	계열	단과대 학명칭	모집단위			'12학년도 입학정원
	대학	학부	학과 (전공)				대학	학부	학과 (전공)	
인문 사회					인문 사회					
자연과학					자연과학					
공학					공학					
예체능					예체능					
의학					의학					
계					계					

【서식 5】

□ 통·폐합 후 대학 조직도

【서식 6-1】

□ 통·폐합 후 교육여건 개선 내용

○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구분	현행 ('08.3.1)			통·폐합 후 ('12.4.1)			비고
	기준	보유	확보율(%)	기준	보유	확보율(%)	
교사(㎡)	00대학(교)						
	00대학(교)						
	계						
교지(㎡)	00대학(교)						
	00대학(교)						
	계						
수익용기본 재산(백만원)							

※ 작성요령

- ① 현행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확보를 산정은 서식 2-3-1, 2-3-2, 2-3-4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② 통·폐합 후의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확보를 산정기준은 편제 정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서식 6-2】

○ 통·폐합 후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계획

계열별	'11 확보율	'12. 4. 1기준				'13. 4. 1기준			
		학생수	교원정원	전임교원수	확보율	학생수	교원정원	전임교원수	확보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									

계열별	'14. 4. 1기준				'15. 4. 1기준			
	학생수	교원정원	전임교원수	확보율	학생수	교원정원	전임교원수	확보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								

※ 작성요령

- ① '11년도 확보율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재
- ② 학생수는 편제정원과 당해 연도 4. 1일 기준 등록학생 수 중 적은 수를 채택하고 '12년도부터는 추정치를 기재
- ③ 전임교원 정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 5] 에 의거 산출함
- ④ 전임교원 수는 매년 4. 1일 기준일의 전임교원 수를 계획하여 기재
- ⑤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율은 우리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서식 7】

- 폐지되는 대학의 재학생 및 교직원 조치계획
-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 준치기간 등 기재
 - 폐지되는 대학의 교원 및 직원의 조치계획을 상세히 작성

【서식 8】

- 폐지되는 대학의 캠퍼스 활용계획
- 통·폐합되는 대학이 각각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 캠퍼스별 활용계획,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기타 통·폐합 관련 문서】

- 대학 통·폐합 안전이 의결된 이사회회의록 사본
- 대학 통·폐합 합의서 : 학교법인이사장, 통·폐합 대학의 장 등 3인이 연명·작성함
- 대학 구성원, 동창회 등의 통·폐합 의견수렴 결과

서림대학 통·폐합 심사점검표 제출서

2011.

학교법인 00학원
(00대학(교), 00대학(교))

법인명 :

1. 주소 및 동일법인 경영학교 등

가. 법인주소

나. 대학주소

나. 동일법인 경영학교명

다. 동일구내 병설학교명

2. 설립인가 신청서 등 : 신설(허가), 기존학교개편(정관변경 인가)

가. 법인설립허가 연월일

나. 대학설립 연월일(1)

다. 대학설립 연월일(2)

라. 개교일

3. 학교법인 이사장, 총·학장 학력·주요경력 등

구 분		법인 이사장		총·학장	
성 명					
학 력	취득 연도	취득대학교(명)	전공	취득 연도	취득대학교(명)
학사					
석사					
박사					
주요경력					
현 직					

4. '11. 4. 1기준 계열별 구분(「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9항 관련<별표1>) 및 학생정원

대 계열		포함되는 소계열(개설학과)		(입학정원)		편 제	비 고
계열	학과	(명)	(명)	(명)	(명)		
계열		(명)	(명)	(명)	(명)		
계열		(명)	(명)	(명)	(명)		
계열		(명)	(명)	(명)	(명)		
계열		(명)	(명)	(명)	(명)		
계 ()		(명)	(명)	(명)	(명)		

1-1. 교사·교지 확보현황 점검표(캠퍼스별)

※ 근거 :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교사)①교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한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단위:면적/m)

구분								12년도 비고
구분	12년도 기준면적	12년도 보유면적	12년도 확보율	12년도 기준면적	12년도 보유면적	12년도 확보율	비고	
1. 기본시설	가. 강의실							
	나. 실험실습실							
	다. 교수연구실							
	라. 대학본부 (행정실포함)							
	마. 학생회관							
2. 지원시설	바. 그 부대시설							
	사. (1)열람실							
	(2)장기간해물실							
	(3)참고도서 열람실							
	(4)서고 및 사무실							
소계								
계								
3. 연구시설	가. 체육관							
	나. 강당							
	다. 전자기계산소							
	라. 학생 기숙사							
	마. 그 부대시설							
소계								
계(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학교 현장	4. 부속시설 (부속별인들)							
총계(1+2+3+4)								
교지								

※ 1. 학생회관(학생복지시설등), 2. 체육관(실내체육관.체력장 등), 3. 강당(소강당등), 4. 전자기계산소(인문.사회계열등 전산실)

2. 「대학시설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단위: 면적/m)

※ 1. 학생회관(학생복지시설등), 2. 체육관(실내체육관·체육관 등), 3. 강당(소강당등), 4. 전자계산소(인문·사회
계열등 전산실)

1-2. 교사·교지 확보현황 점검표(캠퍼스별)

※ 근거 :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교사)①교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한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단위:면적/m)

대학교 (단위: 면적)

※ 근거: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교사) ① 교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한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단위: 면적)

구분	'08년도 기준면적	'08년도 보유면적	'08년도 확보율	평제안상연도 기준면적	평제안상연도 보유면적	평제안상연도 확보율	비고
1. 기본시설							
가. 강의실							
나. 실험실습실							
다. 교수연구실							
라. 대학본부 (행정실포함)							
마. 학생회관							
바. 그 부대시설							
사. 도서관							
(1) 열람실							
(2) 장기간행물실							
(3) 참고도서 열람실							
(4) 서고 및 사무실							
소계							
계							
2. 지원시설							
가. 체육관							
나. 강당							
다. 전자계산소							
라. 학생 기숙사							
마. 그 부대시설							
소계							
3. 연구시설							
가. 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소계							
4. 부속시설 (부속별인들)							
총계(1+2+3+4)							
교지							

교사
확보
기준

※ 1. 학생회관(학생복지시설등), 2. 체육관(실내체육관·체육관 등), 3. 강당(소강당등), 4. 전자계산소(인문사회계열등 전산실)

※ 1. 학생회관(학생복지시설등), 2. 체육관(실내체육관·체육관 등), 3. 강당(소강당등), 4. 전자계산소(인문·사회
계열등 전산실)

2. 전임교원 확보현황 점검표

A. 전임교원 확보 현황 및 확보계획									
계열별	'11. 4. 1 기준 확보율		'12. 4. 1 기준(계획)			'13. 4. 1 기준(계획)			
	OO대학교	OO 대학	최소기준	확보계획	확보율	최소기준	확보계획	확보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									
개원별	'14. 4. 1 기준(계획)		'15. 4. 1 기준(계획)						
	최소기준	확보계획	확보율	최소기준	확보계획	확보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									

B. 등·폐합되는 학과(부/대학) 교수 대책

C. 교수 중원계획

3-1.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점검표(2008년도)

A.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소득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②, 연간소득), [부동산=총수입-총비용(제세공과금+필요경비)] (단위:천원)									
가. 기준자산 및 확보율		나. 수익용기본재산확보액 다. 연간소득액⑨							
①운영수익총액	②공제액(연방금+기부금)	③기준액(①-②)	④확보율(③/④)	⑤부동산	⑥상장주식등	⑦예금/채권	⑧계	⑨계	⑩과부족(⑨-⑩)
※ 학생 1인당 등록금(천원) : 천원 ※ 참조: ②공제액 계산내역(천원)									
B.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소득액 현황									
•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③(시가표준) • 부동산 연간소득 산출: 부동산연간소득=총수입-총비용(제세공과금+필요경비)									
구분	토지	건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내용(요약)	평가방법	확보액(평가액)	연간수입액			
부동산									
(상장)주식 등				공시지가					
예금/채권				기준시가					
수익사업체				시가					
				원금					
				자본금					
계									
※ 특기사항 기재									
C. 수익용기본재산의 발생수익 중 학교운영 경비 부담내역 (단위:천원)									
※ 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등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총수입(①)	총비용(②)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수익금 (A=①-②)	학교운영경비 부담내역						
			기준액	경상비로 진출한 금액	부담액(C)	과부족(C-B)	부담율(%)		
			(B=A×80%)				(C/B)×100		
※ 수익용기본재산 중 총비용(②) 내역 (단위:천원)									
①제세공과금		②법정부담경비		계(①+②)					
재산세+종합토지세등		법정부담금							
공과금(교동유발부담금등)		필요경비							
보험료 등									
계									

3-2.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점검표(편제원성연도)

A.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소득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②·연간소득), [부동산=총수입-총비용(제세공과금+필요경비)] (단위:천원)
 가. 기준산출 및 확보율 나. ⑩수익용기본재산확보액 다. 연간소득액⑨ 라. 계산총액의 3.5%이상 소득재산

①운영수익총액	⑤부동산	⑩소득율(⑩/③)	
②공제액(전입금+기부금)	⑥상장주식등	⑪기준액(⑩×35%)	
③기준액(①-②)	⑦예금/채권	⑫연간소득(⑨)	
④확보율(⑧/③)	⑧계	⑬과부족(⑨-⑩)	

⑬학생 1인당 등록금(천원) : 천원

※ 참조 : ②공제액 계산내역(천원)

B.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소득액 현황
 .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③(시가표준)
 . 부동산 연간소득 산출 : 부동산연간소득=총수입-총비용(제세공과금+필요경비)]

구분	물량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내용(요약)	(단위:천원)
부동산	토지	평가방법	확보액 (평가액)
	건물	공시지가	수입액
(상장)주식 등		기준시가	
예금/채권		시가	
수익사업체		원금	
		차분금	
계			

※ 특기사항 기재

C. 수익용기본재산의 발생수익 중 학교운영 경비 부담내역
 ※ 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단위:천원)

총수입(①)	총비용(②)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수익금 (A=①-②)	학교운영경비 부담내역		
			기준액 (B=A×80%)	부담액(C) (C/B×100)	부담율(%) (C/B)×100

※ 수익용기본재산 중 총비용(②) 내역 (단위:천원)

①제세공과금		②법정부담금		계(①+②)
재산세+종합토지세등		법정부담금		
공과금(교부유발부담금등)		필요경비		
보험료 등				
계		계		

【붙임 자료】

□ 연도별 학생정원 변동사항(편제정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소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소계						
합계						

2 심사점검표 2-2. 증빙자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대학교 ()대학	통합대학	통합대학	통합대학	통합대학	통합대학	
학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계						
대학원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계						
합계							

※ 입학정원 감축계획은 표 하단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대학원은 입학정원 기준으로 산정함
 (일반/특수대학원은 1.5, 전문대학원은 2배로 환산하지 않음)

2011년						
구분	2012년					
	통합대학	A대학교	B대학	학생수 합계	교원정원	교원수
학부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					
대학원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					
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구분	통합대학	A대학교	B대학	학생수 합계	교원정원	교원수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학부	소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대학원	소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계	소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2013년									
구 분		통합대학	A대학교 예상학생수	B대학 예상학생수	학생수 합계	교원정원	교원수	확보율	
학부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								
대학원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								
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2014년									
구 분		통합대학	A대학교 예상학생수	B대학 예상학생수	학생수 합계	교원정원	교원수	확보율	
학부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								
대학원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								
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구 분		2015년						
		통합대학	A대학교 예상학생수	B대학 예상학생수	학생수 합계	교원정원	교원수	확보
학부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							
대학원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							
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 대학원 학생수 계산 : 일반/특수대학원은 1.5배, 전문대학원은 2배로 환산

답 변 서

사 건 2011구합33679 대학교통폐합승인처분취소
원 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외 4명
피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결		재
계	사무장	변호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사건경위

소의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고 함)은 2011. 4.29. 피고에게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합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을제1호증) 그런데 대학통폐합은 두 개의 대학을 합쳐 하나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어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재산 등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충족여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제5조)

법무법인
우리법률 변호사 김 중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이화빌딩 3층)
전 화 : 585-3978~9 FAX : 587-6775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2011. 5.19. 1차 심의를 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학교법인에서 2011. 5.30. 수정본을 제출하였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11. 5.31.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2011. 6. 9. 수정본을 제출하였고 2011. 6.23. 열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을제2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11. 학교법인에 대하여 통폐합을 승인하였습니다.(갑제1호증)

2.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 7155 판결, 대법원 2007. 4.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그런데 원고들은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원고 조규호, 같은 김미라는 경원대학교 졸업생, 원고 박찬웅, 같은 고낙준은 경원대학교 재학생으로 이 사건 통·폐합승인에 대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3. 1.14.자 92마916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되어야 합니다.

나. 대학사회의 특수성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립대학의 재학계약에는 교육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일반사회관념 상 확정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는 한 교수들의 지도와 대학행정당국의 행정조치에 학생들이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법무법인
우리법률 변호사 김 중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이화빌딩 3층)

전 화 : 585-3978~9 FAX : 587-6775

소 장

원 고 1.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경원대학교 내

대표자 조 규 호

2. 조 규 호

3. 김 미 라

4.

5.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인, 이현제, 박소형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

피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교통·폐합승인처분 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한 가천외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 통·폐합 승인처분은 이관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법무법인

새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
TEL : 031) 707-5005 FAX : 031) 707-5205

1.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이하 가천경원학원이라 합니다)은 2009. 12.경 학교법인 경원학원과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통합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산하에 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원대학교는 학교법인 경원학원이 1982. 3.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에 개교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2008년경 입학정원 3,157명 규모의 종합사립대학교으로 성장하였고, 가천의과학대학교는 경기도립 인천병원 부설 간호원양성소에서 출발하여 경기간호전문대학을 거친 후 1985년경 학교법인 신명학원(1995. 5. 가천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으로 설립자변경을 하고 1999. 3. 현재의 명칭으로 학교명을 변경한 후 2008년경 입학정원 827명 규모의 대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천경원학원은 2010년경부터 위 두 대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2011. 4. 1. 통합추진위원회 심의, 같은 단 5. 교무위원회 심의, 같은 단 8. 교수, 직원, 동문회임원 설명회 개최, 같은 단 11. 총학생회 설명회 개최, 같은 단 12. 교무위원회 개최, 같은 단 18. 대학평의회 심의, 같은 단 27. 이사회 개최 등 절차관 거쳐 같은 단 29.경 피고에게 통·폐합 승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사 등을 거쳐 피고는 2011. 7. 11.경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승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인사항

가. 통·폐합 후 대학의 명칭 : 가천대학교

나. 통·폐합 후 대학의 위치

-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 가천대학교 인천캠퍼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191

다. 통·폐합 연월일 : 2012년 3월 1일

법무법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
TEL : 031) 707-5005 FAX : 031) 707-5205

다. 통·폐합 후 2012년도 입학정원 : 학부 3,984명(야간 182명)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가 통·폐합 후 대학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승인한 것은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통·폐합의 유형에 대하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변표 1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등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제2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변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피고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심의 의견을 하여 피고가 통·폐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나 피고의 통·폐합에 관한 승인 처분 시 검토 기준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에 대한 것만 있을 뿐이고 명칭에 대한 부분은 승인 처분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반하여 통·폐합 후 대학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였고, 그 위치를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와 '가천대학교 인천캠퍼스'로 정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승인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학교의 명칭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재학생, 동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인가만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원대학교와 가천외과학대학교 사이의 통·폐합 신청 당시 위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학생과 동문을 절대 다수인 96%가 '경원대학교'로의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상태에서, 더구나

법무법인

세 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
TEL : 031) 707-5005 FAX : 031) 707-5205

몽·폐합의 신청을 위한 의견수렴에서도 몽·폐합 후의 대학교 명칭에 대하여 '가천대학교'로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학교재단 관련자 몇 명의 의도로 몽·폐합 후 학교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여 비밀리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한 재학생, 동문 등이 '가천대학교'로의 몽·폐합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재단의 주장에 편승하여 만연히 몽·폐합 후 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한다는 내용의 승인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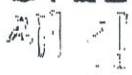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가천경원학원의 정관에 위반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단의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원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를 수료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원 사이의 친목도모와 모교인 경원대학교의 발전,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그 명칭이 경원대학교총동문회인 것처럼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이 주는 의미와 중요성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또한, 명칭의 변경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 조규호, 김미라는 경원대학교를 수료하여 현재 동문인 자이고, 원고 , 는 현재 경원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입학 이전 대학교 선택 시부터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을 중요시 하였고, 재학, 졸업 후까지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역사, 입학정원, 규모 등에 있어서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는 차이가 많습니다. '경원'이란 명칭은 1982년부터 계속 사용되면서 약 30년의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긍정적으로 알려져 왔고, '가천'이란 명칭은 불과 10여년 전인 1999년경부터 사용된 명칭이어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생소합니다. 특히, '가천'이란 명칭은 현재의 가천경원학원 이사 중 1인에 관련된 명칭이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대학교의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사사로운 명칭입니다. 또한, 입학정원 규모도 경원대학교가 가천의과학대학교보다 4배나

법무법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
TEL : 031) 707-5005 FAX : 031) 707-5205

많고, 이에 따른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역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폐합 되는 학교의 명칭은 두 대학교의 교직원, 재학생, 동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거나 적어도 절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원대학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경원대학교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수렴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되어 내려진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헌법 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고, 경원대학교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 역시 침해당했습니다. 또한, 재학생인 원고 , 은 입학 당시 원하고, 가천경원학원과 약정했던 경원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3. 건 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법정에 근거가 없고, 정관에 위배된 것이며,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어서 그 취소란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공·폐합승인 |
| 1. 갑 제2호증 | 정관 |
| 1. 갑 제3호증의 1, 2 | 각 성명서 |
| 1. 갑 제4호증의 1, 2 | 각 신문기사 |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2. 소장부분
3. 위임장

법무법인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
TEL : 031) 707-5005 FAX : 031) 707-5205

4. 담당변호사지정서

5. 납부서

2011. 1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이 현 용

서울행정법원 귀중

법무법인

세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금화빌딩 503호
TEL : 031) 707-5005 FAX : 031) 707-5205

제	제
체	사무장 변호사

의견서

사 건 2011헌마601 통폐합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학교법인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외 4명
 이해관계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사건 경위

소외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고 함)은 2011. 4.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을제1호증) 그런데 대학통폐합은 두 개의 대학을 합쳐 하나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어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재산 등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충족여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제5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2011. 5.19. 1차 심의를 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학교법인에서 2011. 5.30. 수정본을 제출하였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11. 5.31.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2011. 6. 9. 수정본을 제출하였고 2011. 6.23. 열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을제2호증)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7.11. 학교법인에 대하여 통폐합을 승인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법무법인
 우리법률 변호사 김 중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이화빌딩 3층)
 전 화 : 585-3978~9 FAX : 587-6775



2. 적법요건

가. 자기관련성

청구인들은 경원대학교총동문회, 같은 조규호, 같은 김미라는 경원대학교 졸업생, 같은 박찬웅, 같은 고낙준은 경원대학교재학생으로,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에 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 맨 마지막에 “청구인들은 행정소송 등 절차에 의한 구제절차를 고려하고 있지만, 원고적격 문제로 구제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청구인들 스스로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직접성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이 아닌 교명 변경을 다투는 취지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폐합승인처분은 학교법인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그 상대방이 아니어서 청구인들은 간접적, 사실적 관련성 밖에 없어 직접성도 없습니다.

다.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승인처분에 대해 먼저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는 뒤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었습니다.

3. 청구인들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들 주장처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명변경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이 없다면 승인으로 인해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법률 변호사 김 종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이화빌딩 3층)
전화 : 585-3978~9 FAX : 587-6775

나. 고등교육법 제18조를 보면 사립학교는 학교의 명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정관(갑제2호증) 제3조에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명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정수의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제5조) 학교법인은 언제든지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학교법인이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를 통합하면서 정관에 따라 가천대학교로 교명을 정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의 교명변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통폐합과정을 거쳐 설립된 대학교의 명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여할 이유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합니다. 설사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증방법

1. 을제 1 호증

통합승인신청

1. 을제 2 호증

통폐합승인신청심사

결과 및 조치계획(안)

2011. 11. .

이해관계인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헌법재판소

귀중

법무법인
우리법률 변호사 김 중 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이화빌딩 3층)

전화 : 585-3978~9 FAX : 587-6775